

공 제 규 정

2009. 04.17.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규정』 안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명칭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단
공제사업의 범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택관리와 관련한 위법행위 등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에 대한 보증 등 각종 보증관련 사업 2. 회원 등에 대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3. 회원 등에 대한 주택관리자재의 구매 알선 4. 공제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 5. 회원 등에 대한 상조·재정보증 및 자금의 융자 6. 주택관리기술의 개발·지원·공급과 이를 위한 주택관리관련 법인에의 출연 또는 출자 7. 공제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 처분, 임대, 개발 및 투자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의 부대사업
자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사업 자본금은 2억원이상으로 함 ○ 의결권 있는 출자제도를 두지 않음 ○ 협회 산하기관, 회원 등에 의해 의결권없는 자본금 출연을 통해 초기 공제사업의 운영자금 충당
공제사업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회 내 기관으로 운영 ○ 협회내에 공제사업단을 두어 사업단장체제로 공제사업을 운영
공제계약 및 공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가입대상 : 공동주택 등의 관리사무소장과 공동주택 등의 관리업무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입주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 등 ○ 공제료 : 공제상품별로 공제가입금액에 따라 세칙이나 약관으로 정함
의사결정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 의결업무를 협회 이사회에서 수행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규정의 개정 제안 -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심의 - 책임준비금 적립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용도 - 사업단장의 선임제청 - 이사회에서 선임한 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운영위원회를 두어 실무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및 예산안·결산안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규정의 시행세칙과 공제약관의 제정 및 개정 - 분기별 영업보고서 승인 - 공제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심사보상위원회를 두어 보상관련업무를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금 지급기준의 설정·변경 및 지급 공제금액의 심사 - 구상대상자 및 구상제외자 심의 및 결정 - 심사보상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회총회에서 선출된 협회 감사로 보함 ○ 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
사업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단장을 두어 공제회의 실무적인 업무를 총괄 담당하며 협회 회장을 보좌 ○ 사업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사업단장은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 심사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의 중요 직책을 수행함 ○ 부칙으로 공제사업의 재정자립도 가 인정될 때까지는 사업단장의 선임을 유보할 수 있으며, 선임시기는 이사회 의결을 받도록 함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운영위원의 숫자는 9인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협회장 - 사업단장 - 이사회 선임 4인, 국토해양부 1인, 외부전문가 1인, 회계전문가 1인 ○ 심사보상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다른 위원회의 위원과 같이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위원으로서 5~7인을 둠 ○ 공제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회장은 공제사업의 운용실적을 회계연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규정』

2008. 11. 27. 총회의결

2009. 4. 17. 주택건설과 1235 승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택법 제8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시행하는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택관리사 회원 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및 복리향상과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설립하여 공제사업 등을 담당하는 기구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단’(이하 “공제사업단”이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 공제사업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제사업에 관하여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제가입회원”이라 함은 손해배상책임 등을 보장받기 위하여 공제료를 공제사업단에 납부하고 공제에 가입한 공제계약자를 말한다.
2. “피공제자”라 함은 공제금을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자를 말한다.
3. “공제금”이라 함은 공제사고가 발생하여 피공제자에게 지급되는 실질적인 손해배상금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보증성 공제금과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보험성 공제금을 말한다.
4. “공제가입금액”이라 함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제사업단이 배상할 최고한도로서 계약당사자간의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
5. “공제료”라 함은 공제계약자가 공제에 가입하기 위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공제사업단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6. “공제기간”이라 함은 공제사업단이 공제금의 지급책임을 지는 약정된 기간을 말한다.
7. “공제증서”라 함은 공제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회장이 기명날인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를 말한다.
8. “공제약관”이라 함은 공제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될 표준적인 계약조항을 말한다.

제6조(공제사업의 범위) 공제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주택관리와 관련한 위법행위 등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에 대한 보증 등 각종

보증관련 사업

2. 회원 등에 대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3. 회원 등에 대한 주택관리자재의 구매 알선
4. 공제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
5. 회원 등에 대한 상호·재정보증 및 자금의 용자
6. 주택관리기술의 개발·지원·공급과 이를 위한 주택관리 관련 법인에의 출연 또는 출자
7. 공제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 처분, 임대, 개발 및 투자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의 부대사업

제2장 공제가입회원

제7조(공제가입회원의 자격취득) 공제가입회원은 공제에 가입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납부한 때에 자격을 취득한다.

제8조(공제가입회원의 권리와 의무)

공제가입회원은 공제약관 및 공제증서에 기재된 권리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법령·정관·이 규정·세칙 및 공제약관 등의 준수
2. 공제증서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 그 통지
3. 공제사고의 예방 및 사고처리를 위한 업무에 협조
4. 공제사고 발생의 통지
5. 기타 공제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대한 협조

제3장 자본금

제9조(자본금) ①공제사업자본금(이하 “자본금”이라 한다)은 2억원 이상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자는 자본금을 협회에 출연할 수 있다.

1. 협회의 산하법인
2. 협회 회원
3. 그 밖의 세칙으로 정하는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출연한 자본금의 출연방법·출연기간·출연혜택 및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장 공제계약

제10조(공제가입대상) ①공제가입대상은 공동주택 등의 관리사무소장과 공동주택 등의 관리업무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입주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 등으로 한다.

②공제계약절차 및 공제상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공제약관) ①공제사업단은 공제가입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약자에게 미리 공제약관을 제시하고, 약관의 내용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게 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공제약관은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1. 배상책임에 관한 보장내용
2. 공제사업단의 면책사유
3. 공제금의 지급범위 및 한도
4.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사항
5. 공제가입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6. 공제계약의 실효 사유
7. 공제료에 관한 사항
8. 손해방지 및 경감조치
9. 구상권 및 대위권
10. 기타 공제계약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공제계약의 체결 및 해지) ①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제계약의 청약과 함께 해당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공제료를 납부한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한다. 온-라인 공제가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공제가입회원이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계약의 체결을 거절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고의로 공제사고를 유도한 자
2. 입주자 등과 통정하여 허위로 공제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
3. 지급 공제금의 50%이상 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한 자(구상권 행사 대상 공제계약자를 말한다). 다만, 분할상환 약정을 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고의로 인하여 공제사업단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거나 이 규정에 의하여 제재 또는 조치 등을 받은 자
5. 고의로 손해배상사고를 발생시킨 자로서 공제가입금액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사고에 연루되어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

③공제계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공제증서 교부) ①공제사업단은 공제가입회원에게 인적사항 및 공제계약 내용이 기재된 공제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공제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공제가입회원은 공제증서가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공제계약의 실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계약이 실효된다. 이 경우 공제가입회원의 자격도 상실한다.

1. 공제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2. 공제가입회원이 사망한 때
3. 공제가입회원이 정당한 신청에 의하여 공제계약을 해지한 때
4.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제계약을 해지한 때

제5장 공제료

제15조(공제료) 공제료는 공제상품별로 공제가입금액에 따라 세칙이나 약관으로 정한다.

제16조(공제료의 수납) ①공제가입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공제료를 공제사업단 계좌로 입금 또는 대체하여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무소에서 공제료를 수납할 수 있다.

③공제료 수납방법 및 공제계약 등의 전산처리와 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7조(공제료의 환급) ①제14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공제료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가입회원에게 환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제료의 환급절차, 환급금 산출방법,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6장 공제기금

제18조(공제기금) ①공제사업은 법제8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로 관리하되 공제사업의 수행을 위해 공제기금을 둔다.

②공제기금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정으로 운용한다.

1. 손해배상기금
2. 복지기금

③공제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자본금
2. 공제료
3. 공제금에 대한 구상금액
4. 기타 이자 등의 수입

제19조(손해배상기금) ①손해배상기금은 공제가입회원이 공제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손해배상책임을 공제사업단이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의 적립
2. 다음 각목의 비용
 - 가. 구상권 행사 및 권리의 보전에 소요되는 비용
 - 나. 공제금 지급청구관련 소송비용
 - 다. 공제사업단의 운영을 위한 사업단의 인건비·제사무비 및 제부대비
 - 라. 운영위원 및 심사보상위원의 회의수당 등
 - 마. 기타 위 각목의 1의 부대비용

②제1항제1호의 책임준비금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 회계연도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20조(복지기금) 복지기금은 공제기금 중에서 손해배상기금으로 책정한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로 책정하고,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공제료 환급
2. 회원 등에 대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3. 회원 등에 대한 주택관리자재의 구매알선
4. 공제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
5. 회원 등에 대한 상호재정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 상호부조 및 복리·후생
6. 주택관리기술의 개발·지원·공급과 이를 위한 주택관리 관련 법인에의 출연 또는 출자
7. 공제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처분, 임대, 개발 및 투자비
8. 다음 각목의 1의 관측활동비
 - 가. 공제가입 수요자 및 공제가입회원에게 주택관리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 나. 공제상품 판매에 따른 필요한 운영비
 - 다. 기타 공제사업 홍보비 등 관측활동비

제21조(공제기금의 관리 및 보전) ①공제기금은 공제금 지급위험부담의 경감과 공제사업의 안전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 및 보전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기금은 제 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예치하거나 가입하여 관리한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치
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공제료에서 재보험가입을 포함한다)
3. 금전신탁
4. 유가증권 등 채권의 취득
5. 회원 등에 대한 대출
6. 부동산 취득·처분·임대·개발 및 투자 등의 수익사업
7. 기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관리 및 보전방법

②공제기금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7장 공제금

제22조(공제금의 지급) ①피공제자가 공제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제사업단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제금 지급 청구서
2. 사고증명서(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 포함)
3. 신분증(주민등록증, 대리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피공제자와 공제가입회원간의 손해배상합의서·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5. 기타 피공제자가 공제사고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공제가입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제사업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2호의 경우에는 공제사업단의 손해사정이 있어야 한다.

1.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재판상 화해를 하고자 하거나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하고자 할 때
2. 피해자 등 피공제자와 손해배상 합의를 하고자 할 때

③공제사업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금지급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공제사고의 내용을 조사하고, 공제사고 내용이 공제금 지급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공제약관 및 공제증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준비금에서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공제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3조(손해방지 및 경감조치) ①공제가입회원은 피공제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제사업단에 서면 및 전자우편으로 통보하고, 손해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②공제사업단은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액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해자와의 절충, 합의, 중재 등 사고해결에 직접 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가입회원은 공제사업단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공제사업단은 사고예방 및 사고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가입회원의 업무집행에 대한 지도·점검·조사 및 관계인에 대한 자료요청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 및 공제규정을 위반한 단서를 발견한 때에는 시정요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공제가입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협의 및 사전에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손해금액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제24조(구상권 및 대위권) ①공제가입회원이 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등 약관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공제사업단이 공제금을 지급

하였을 때에는 당해 공제가입회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피공제자가 공제가입회원에게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취득한다.

②공제사업단의 구상권 행사의 범위 및 절차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8장 복지사업

제25조(대출사업 등) ①공제사업단은 공제회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자녀학자금 등 대출에 관한 사업과 공제회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부대사업으로서 각종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업을 위한 방법 및 취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9장 이사회 및 위원회

제26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공제규정의 개정 제안
2.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 심의
3. 책임준비금 적립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용도
4. 사업단장의 선임제청
5. 제27조제3항 제1호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선임 및 해임
6. 기타 협회장이 제28조의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협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9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유고시에는 사업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운영위원”이라 한다)은 사업단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7인을 협회장이 위촉한다.

1. 이사회에서 선임한 자 4인
2.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 자 1인
3. 공제(보험)전문가 또는 변호사 등의 외부전문가 1인
4. 공인회계사 등 회계전문가 1인

④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운영위원의 임기는 임기만료일까지 전년도 결산기에 관한 총회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그 결산기에 관한 총회 종결일까지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⑥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1. 무능력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7. 주택관리사(보) 자격자인 경우에는 협회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8.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 또는 조치 등을 받은 자

제28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안·결산안 작성
2. 이 규정의 시행세칙과 공제약관의 제정 및 개정
3. 분기별 영업보고서 승인
4. 공제사업의 개발연구, 평가 및 사업수행 방침에 관한 사항
5. 공제수익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
6. 공제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제43조에 의한 비위사실 심의
8. 기타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협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9조(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방법) ①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정기회의는 매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 운영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단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⑤위원장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운영위원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운영위원의 연대서명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⑥운영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장소·목적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개최 7일 전까지 운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 운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운영위원회는 대리 또는 서면출석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⑨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출석 운영

위원 2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제30조(심사보상위원회) ①심사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된다.

②심사보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협회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2. 공제, 보험 및 손해사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동주택 관리경험이 풍부한 공제사업단의 임·직원

③심사보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심사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제금 지급 기준의 설정·변경 및 지급 공제금액의 심사
2. 공제금 결정에 대하여 공제가입회원 또는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항의 조정
3. 구상대상자 및 구상제외자 심의 및 결정
4. 심사보상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⑤ 심사보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0장 공제사업단

제31조(공제사업단의 구성) ①협회에는 공제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제사업단을 둔다.

②공제사업단에는 사업단장 1인과 사무직원으로 구성된다.

③공제사업단의 사무조직의 편성 및 직제 등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2조(사업단장 및 감사) ①사업단장은 이사회에서 제청하여 협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협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외부 전문가를 사업단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사업단장은 제27조제6항의 운영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선임될 수 없다.

③감사는 협회 감사로 보한다.

제33조(임기) ①사업단장의 임기는 임명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사업단장의 궐위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 제청되어 협회장이 임명할 때까지 운영위원 중에서 협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직무) ①사업단장은 공제회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주요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협회장에게 그 요지를 보고하고, 매 분기별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
2. 심사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

3. 공제사업단의 업무 지휘·총괄

②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제사업단의 재산 및 회계사항 등 업무전반에 관한 감사
2.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공제업무와 관련하여 의견을 진술
3. 협회 총회에 대한 감사보고
4. 공제사업에 중요한 재정적 문제가 있을 때에는 감사의 합의로 협회장에게 외부감사 요구

③감사는 이 규정에서 정한 다른 직책을 겸임할 수 없다.

제12장 자산 및 회계

제35조(공제자산) 공제사업단의 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성한다.

1. 공제회에 속한 토지, 건물, 시설 및 기타 물건(전세 및 임차보증금 포함)
2. 자본금
3. 공제기금
4. 공제회 자산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익

제36조(회계기간) 공제사업의 회계연도는 매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예산) ①공제사업단은 매 사업년도의 총 수입과 총 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에 최종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산편성지침
2. 사업운영계획
3. 세입·세출예산의 사항별 설명 및 각목명세
4.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등

제38조(결산) ①사업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를 득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에 최종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재산목록
3. 대차대조표
4. 세입세출 결산서
5. 잉여금 또는 손실처리금 계산서

②감사는 제1항의 회계 및 재산현황에 대하여는 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이익잉여금의 처분) ①공제사업단은 매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처분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회원복리사업을 위한 적립
4. 이월금

②이익준비금의 적립은 매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적립하되 그 적립액은 자본금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③회원복리사업을 위한 적립금은 이익준비금을 적립한 후에 그 잔여금이 있을 때에는 그 잔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적립한다.

제40조(자본준비금의 적립) 공제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감소액이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
2. 고정자산의 재평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3. 타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금, 기부금 및 기타 자본잉여금

제41조(결손금의 처리) 공제사업단은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결손이 발생한 때에는 회원복리사업적립금,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제42조(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①협회장은 공제사업의 운용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제1항의 공제사업의 운용실적 공시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그 운용실적을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장 보칙

제43조(비위사실 보고 등) ①감사는 공제사업 운영과정에서 사업단장 또는 그 직원 등 공제사업 관계자가 관계법령 및 이 규정 등을 위반하는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협회장은 그 보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직무정지 및 해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공제사업단은 공제사업 운영과정에서 공제가입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관계 법령 및 이 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4조(시행세칙 및 예규) ①이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②이 규정 및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제 공제사무 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은 예규로 정한다.

제45조(준용규정) 공제사업에 관하여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보증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보험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법 제8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협회장 및 이사회에서 행한 조치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사업단장) 사업단장의 선임은 협회의 재정이 안정화 될 때까지 유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단장의 선임시기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